

새해, 이렇게 달라진다

쓰레기 분리수거제도 ('91.1)

- 쓰레기 분리수거 전국 확대 실시
 - '91년 1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분리수거

'91년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('91.1.1)

- 물가인상을 5.6%를 반영하여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결정
 - '91부과금 산정지수 : 2.5290(2.3949×1.056=2.5290, 1.056는 '90가격 변동지수)
 - '90부과금 산정지수 : 2.3949

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('91.1.1)

- 운행중인 자동차 매연허용기준 강화
 - 현행 매연 30%→40%(20% 강화)
 - 허용기준 초과차량 처분기준 강화

항목	배출가스 허용기준	정비명령		고 발
		현행	개정	
매연	40%이하	51-60%	41-55%	56%이상
일산화탄소(CO)	1.2%이하	1.3-9.0%	1.3-4.4% 또는 촉매 장치 탈거상태로서 1.3-2.4%	4.5%이상 또는 촉매 장치 탈거상태로서 2.5%이상
	4.5%이하	4.6-9.0%	4.6-9.0%	9.1%이상
	220ppm이하 (자기용)	221ppm이상	221-880ppm	881ppm이상
탄화수소(HC)	400ppm이하 (택시)	401ppm이상	401-1,600ppm	1,601ppm이상
	1,200ppm이하 (기존차)	1,201ppm이상	1,201-4,800ppm	4,801ppm이상

중앙환경기술지원단 설치운영 ('91.1)

-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기술 부족업체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
 - 관할관청 또는 배출업소의 요청에 의거 정밀진단 및 원인적 처방 제시
 - 업체의 기밀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업무와는 완전별도로 운영

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 도입 ('90.2.1)

-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해성 심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의 심사를 받은 후 제조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함.

유독물질 취급업 신설 ('91.2.1)

-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, 유독물질 보관·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유독물 취급업을 신설함으로써 시설·장비등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후, 유독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.

기본부과금제도 도입 ('91.2)

-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여 업소별 기본부과금제도 도입
 - 사업장 규모별 기본부과금

1종	2종	3종	4종	5종
400	300	200	100	50

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제 도입 ('91.2)

○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참여과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,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.

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개선 ('91.2)

○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고, 분쟁조정 절차를 현행 조정단일방식에서 알선·조정·재정으로 다원화하였음. 또한 조정신청시 구비서

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함.

페타이어 회수처리 ('91.2)

- 페타이어의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환경오염 없이 폐열을 이용토록 조치
- 페타이어 건류소각을 설치하면 누구든지 페타이어를 열원으로 사용 허용.
- 페타이어 발생자는 건류소각시설 설치자나 시멘트 제조업자와 소성로의 연료로 공급가능
- 페타이어 회수대항은 대한타이어 공업협회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행토록 조치

◆기술계(환경관리)국가기술자격 시행일정◆

●기술사

종 목	회 별	원서접수	필기시험	필기시험합격 예정자발표(예정)	구비서류 제 출	경력심사 발표(예정)	면접시험	합격자발표 (예 정)
대 기 수 소음·진동	제35회	3월11일~ 3월14일	4월7일	5월20일	5월27일~ 5월29일	6월26일	7월22일~ 7월27일	8월12일
대 기 수 기 질	제36회	8월25일~ 8월29일	9월29일	10월31일	11월4일~ 11월6일	11월25일	12월10일~ 12월13일	12월30일

●기 사

종 목	회 별	원서접수	필기시험	필기시험합격 예정자발표 (예정)	●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 ●응시자격서류제출 및 필기 합격자결정 ●실기시험실비납부	실기시험	합격자발표(예정)
환경관리 1·2급	제 1 회	필기시험면제자(필기시험에 합격한자등)			1월7일~1월10일	2월3일~ 2월5일	3월6일
————	제 2 회	3월4일~ 3월7일	3월31일	4월22일	4월22일~4월25일	5월12일~ 5월14일	6월12일
환경관리 1급	제 3 회	3월19일~ 3월22일	4월14일	4월29일	4월29일~5월2일	6월2일~ 6월4일	7월3일
————	제 4 회	4월15일~ 4월18일	5월12일	6월10일	6월10일~6월13일	6월30일~ 7월2일	7월31일
환경관리 2급	제 5 회	5월27일~ 5월30일	6월23일	7월22일	7월22일~7월25일	8월11일~ 8월13일	9월11일
————	제 6 회	7월1일~ 7월4일	7월28일	8월19일	8월19일~8월22일	9월8일~ 9월10일	10월9일
환경관리 1급	제 7 회	8월19일~ 8월22일	9월15일	10월14일	10월14일~10월17일	11월3일~ 11월5일	12월4일
환경관리 2급	제 8 회	9월16일~ 9월19일	10월20일	11월11일	11월11일~11월14일	12월1일~ 12월3일	12월30일